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002

발의연월일: 2023. 5. 15.

발 의 자:이성만・박 정・박성준

김홍걸 • 허종식 • 강준현

주철현 • 신정훈 • 한정애

송옥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'형의 시효의 효과'를 규정하면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·금고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 과 20년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 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2015년부터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공소가 아닌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참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무기자유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 · 금고

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7조, 제78조제1호·제2호 삭제 및 제80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 중 "형을"을 "형(사형과 무기의 징역·금고를 제외한다)을"로 한다.

제78조의 조 번호 "第78條"를 "제7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0조(시효의 중단) 시효는 징역,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, 벌금, 과료,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형과 무기의 징역·금고의 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, 제78조제1호·제2호,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 형을 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 형(사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 형과 무기의 징역·금고를 제 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 외한다)을-----된다. 第78條(형의 시효의 기간) 시효는 제78조(형의 시효의 기간) -----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이 지나면 완성된다. 1. 사형: 30년 <삭 제> <삭 제> 2.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: 20 년 3. ~ 7. (생 략) 3. ~ 7. (현행과 같음) 第80條(時效의 中斷) 時效는 死 제80조(시효의 중단) 시효는 징 刑, 懲役, 禁錮와 拘留에 있어 역,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 형자를 체포함으로, 벌금, 과료, 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, 罰 金, 科料, 沒收와 追徵에 있어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 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 因하여 中斷된다. 단된다.